이사회 규정

제정 2015.06.19.

제1차 개정 2015. 12. 22.

제2차 개정 2017.04.11.

제3차 개정 2018.06.22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주식회사 삼표시멘트(이하 '회사'라 한다)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권한) ①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 ②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제4조(구성) 이사회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제5조(의장) ①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

②대표이사가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사 정관 제35 조 제2항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 종류)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
②정기이사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그 횟수를 늘릴 수 있다. <개정 2018.06.22.>

③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7조(소집권자) ①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. 그러나 대표이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각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- 제8조(소집절차) ①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회일 3일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06.22.>
 - ②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 <개정 2018.06.22.>
- 제9조(결의방법)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상법 제397조의2(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) 및 제398조(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
 -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 - ③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 -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제10조(결의사항) ①이사회의 결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.
 - 1. 주주총회, 이사회 및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사항
 - (1) 주주총회의 소집 및 회의목적사항(부의안건, 보고사항)의 확정
 - (2)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
 - (3) 재무제표, 연결재무제표의 작성
 - (4) 재무제표의 승인(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함)
 - (5) 영업보고서의 승인
 - (6)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- (7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 - (8)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- (9)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
 - (10)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 - (11)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, 준법통제기준의 제·개정 및 폐지 등
 - (12) 지점, 공장,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·이전 또는 폐지
 - 2. 경영, 재무 등에 관한 사항

- (1)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
- (2) 자산에 관한 사항
 - 1) 300억원 이상의 사업용 자산의 취득, 처분 및 양도(자본적지출공사 포함)
 - 2) 100억원 이상의 비사업용 자산의 취득, 처분 및 양도
- (3)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 결정
- (4) 차입금의 증가에 관한 결정
- (5) 최근사업연도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의 5% 이상인 채무의 면제·인수,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, 채무보증, 선급금 지급, 금전 가지급, 금전대여 또는 증권대 여에 관한 결정(단, 거래 상대방이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거래금액을 불문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야 함)
- (6) 신주의 발행
- (7)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
- (8) 준비금의 자본전입
- (9) 전환사채의 발행
- (10)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- (11)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
- (12) 자기주식의 소각
- (13) 합병계약서, 분할계획서의 승인
- (14)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
- (15)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
- (16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
- 3. 임원에 관한 사항
 - (1)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
 - (2)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
 - (3) 임원 보수 규정의 제정 및 개정
- 4. 기타 사항 :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8.06.22.>
 - 1.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 - 2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
 - 3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- 제11조(권한의 위임) 이사회는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권한 이외의 일상적인 업무집행에 대한 결정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. 다만, 상법 등 관계 법령에의하여 위임이 제한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12조(이사회 내 위원회) ①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다음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 <개정 2018.06.22.>
 - 1. 감사위원회
 - 2.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
 - 3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원회
 - ②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 - 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 - 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 - 3.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 - 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 - ③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<개정 2018.06.22.>
 - ④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 -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13조 삭제 <2018.06.22.>

- 제14조(관계인의 출석)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 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제15조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) 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②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 구할 수 있다.
- 제16조(의사록) 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 -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 <개정 2018.06.22.>
 - ③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④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
제17조(간사) ①이사회에 간사를 둔다.

②간사는 이사회 담당 부서장이 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- 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- 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12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- 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6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